

●환경부령 제1094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05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4 제1호라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제작 또는 수입 중지의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